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간점검 리포트

2018. 12. 31.

인사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대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이를 지지하는 정책의 정교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기본법과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사람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게 하는데 매우 소중한 밑알들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적경제는 미비한 정책환경 속에서도, 역량과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한결같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망과 열정으로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개별 기업의 사업의 안착과 성장을 넘어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작동원리와 새로운 질서의 정립을 주창해왔습니다. 멀리는 일제 강점기의 협동조합운동의 존재, 전후 복구와 산업화 시대에 보여준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의 활약,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태동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성장,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확보하면서 자립, 자활의 꿈을 일구어 온 자활운동, 2007년 사회문제 해결을 존재이유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제도화와 확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다양한 협동조합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가치의 실현을 핵심 사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운동의 흐름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개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태동하고 사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 서로를 연결하여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의 확장을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과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현실에서의 한계를 절감한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은 부문, 지역, 업종의 연합체와 대변조직을 만들었고 정부와 지자체에는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반인 사회에는 대중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법률과 부처로 나뉜 정책 추진체계가 가진 한계의 극복을, 사회적경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인식,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환경의 정비, 보상되지 않는 사회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뒷받침할 사회적금융의 구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다 진일보한 사회적경제 정책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비서실 직제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신설되었

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을 보다 일관되게 협의, 조정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인재양성종합계획,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등의 정책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하나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방향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 주체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 중간점검을 통해 확인된 것은 정책적인 변화와 정부의 의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현장과 체감되게 조응하는 것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시적인 정책과 제도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현장의 현실과 요구에는 아직 효과적으로 접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사회적경제 현장이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천착해 정책적인 방향과 지원체계에 들어맞는 전략과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은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사회적경제 현장의 도전이 보다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양극화의 심화, 일자리의 감소,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전통적 산업의 쇠퇴와 지역의 위기, 영리화된 사회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몰락...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망합니다. 바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데 더 크게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민관의 협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힘만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 지자체가 상호 협력자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며 국회 여야 정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합심을 촉구합니다.

인사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하재찬

우리 스스로 성숙하기 위해 돌아보면 좋겠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또한 자정능력(自靖能力)이 필수적인 요소다. 이에 이번 리포트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설문과 잡담회 및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바다같이 모든 사람이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보다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바다와 같은 사회다. 바다는 강물이 모여, 강물은 시냇물이 모여, 시냇물은 조랑물이 모여, 조랑물은 샘물이 모여 이루어진다. 이런 면에서 우리를 살펴야 할 것이다. 조랑물에 강물이 감당할 자정능력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지역마다 그 물의 크기와 깊이 또한 다를 것이다.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돌아봄과 자정, 지역별 관점에서의 돌아봄과 자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보고 리포트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다를 꿈꾸었으면 좋겠다. 다양성이 더 존중받고 그래서 더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바다 말이다. 작은 새우에서 거대한 고래까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바다 말이다. 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민과 관의 연대, 부분과 업종 간 연대, 지역 간 연대, 세대 간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한 발 더 나아가는 기회이길 바란다. 복잡함으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민을, 아쉬운 관을, 의견이 다른 주체를, 부족해 보이는 현장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회이길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과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통합지원체계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지역은 지방이 아니어야 한다. 지방과 서울이 아니어야 한다. 청주란 지역, 서울이란 지역이어야 한다. 통합지원체계는 단일 관점의 전달체계가 아니어야 한다. 즉 지방(지역)정부와 중앙정부의 전달체계가 존재하는 속에서의 통합, (중앙 및 지역)정부차원의 전달체계와 (협의회 및 연대회의 등)민간차원의 전달체계 속 통합, 민과 지역의 주도성 및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한 통합이어야 할 것이다.

본 리포트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쓰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과 정책위원회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밝아오는 새벽, 창 넘어 시나브로 들어오는 햇빛을 느끼며 청주에서

작성의 취지와 과정

- 문재인정부는 포용경제, 사람중심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제반 정책 중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했고, 2017년 10월 28일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과 진출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 인재양성 분야의 구체안도 2018년도에 뒷따라 발표·시행되면서 사회적경제 각 영역에 영향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정책단위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정책 내용과 이행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이후 정책 추진과정이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장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사자 조직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밝힘으로서,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중간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6월), 현장과 계획을 공유하고(7월 사회적경제 박람회), 지역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9월). 설문을 통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여(9월~11월) 최종 종합된 내용은 사회적경제정책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12월).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회와 지역위원회 그리고 지역 집담회와 설문 에 응해주신 현장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애정과 노고에 힘입어 최종 리포트를 제출 합니다.

목 차

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제안과 정부 정책의 개요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7년 대선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1
2) 정부_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년 10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2
3) 정부_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 8일, 관계부처 합동)	3
4) 정부_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년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	4
II. 연대회의의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1) 연대회의의 대선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	5
2) 연대회의의 사회적금융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	23
III.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현황 (정부 자료)	26
IV.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1)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에 대한 의견	56
2)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 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57
3)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체감도에 대한 의견	57
4)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 결과	58
V.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64
V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정부의 과제	75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7년 대선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3대 핵심 정책과제

1.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인정하는 체계로 구성,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

2.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3.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의 실현

1)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

-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정비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협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고용/창업/연구개발/금융 등 기업지원정책 및 공적자원 연계
- 사회적경제의 공공조달분야 및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

2) 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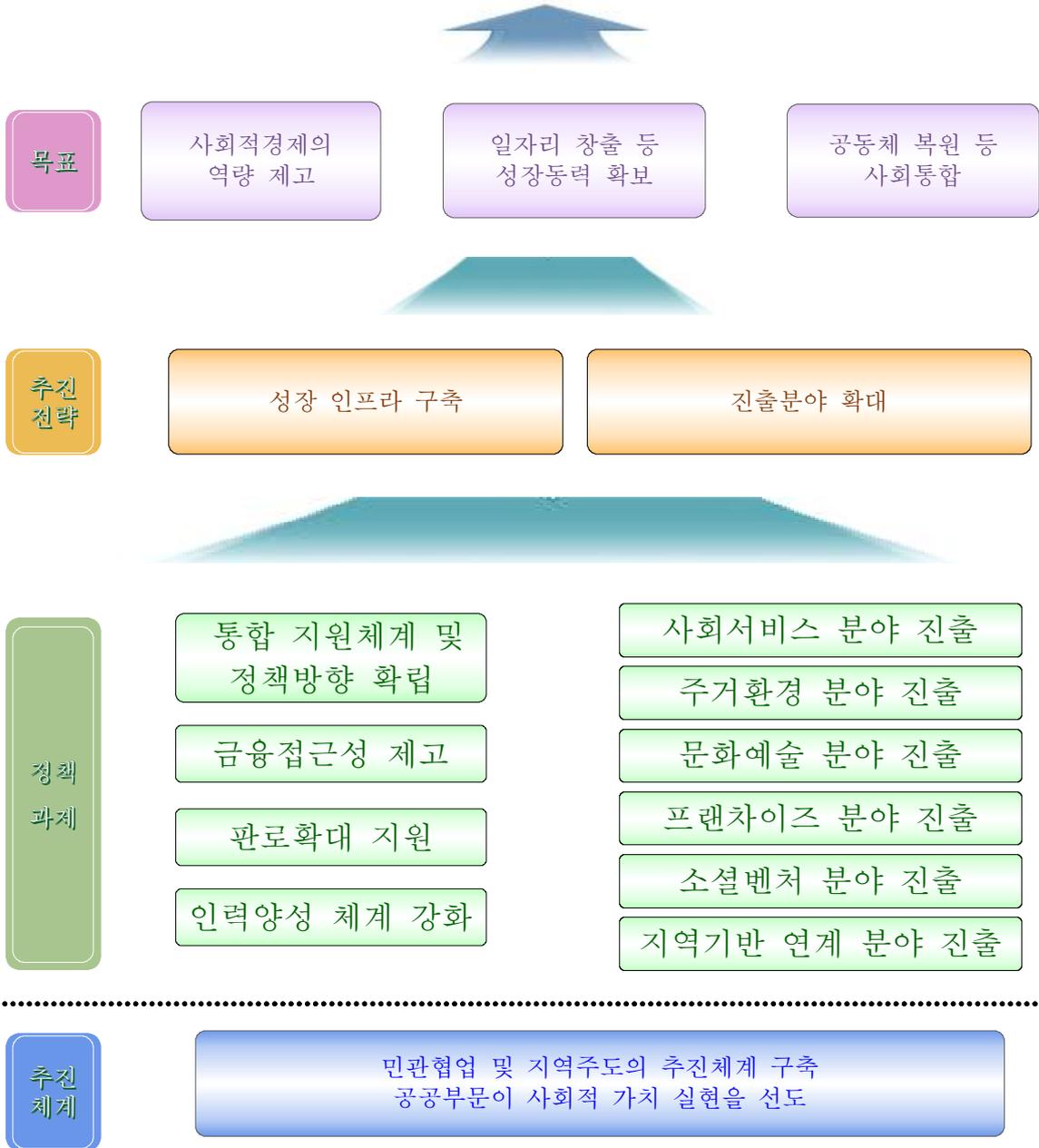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 X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
- 사회적경제 X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체계의 확산 (에)
- 사회적경제 X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생산, 소비 체계의 확산 (식)
- 사회적경제 X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실현 (주)
- 사회적경제 X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 (교)
- 사회적경제 X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일)
- 사회적경제 X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현성 (도)

* 특별제안 1 :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 육성하는 헌법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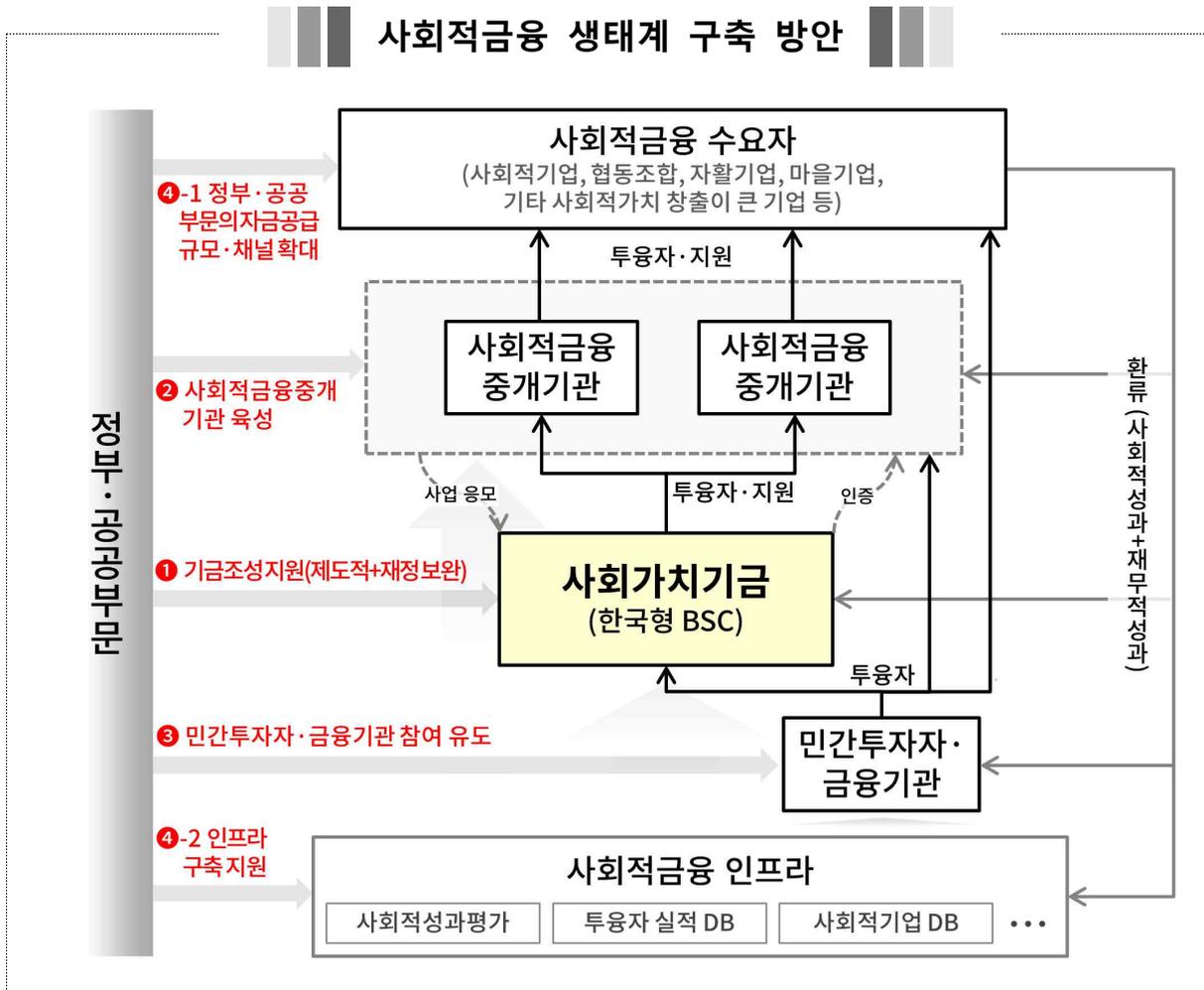
* 특별제안 2 :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

2) 정부_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년 10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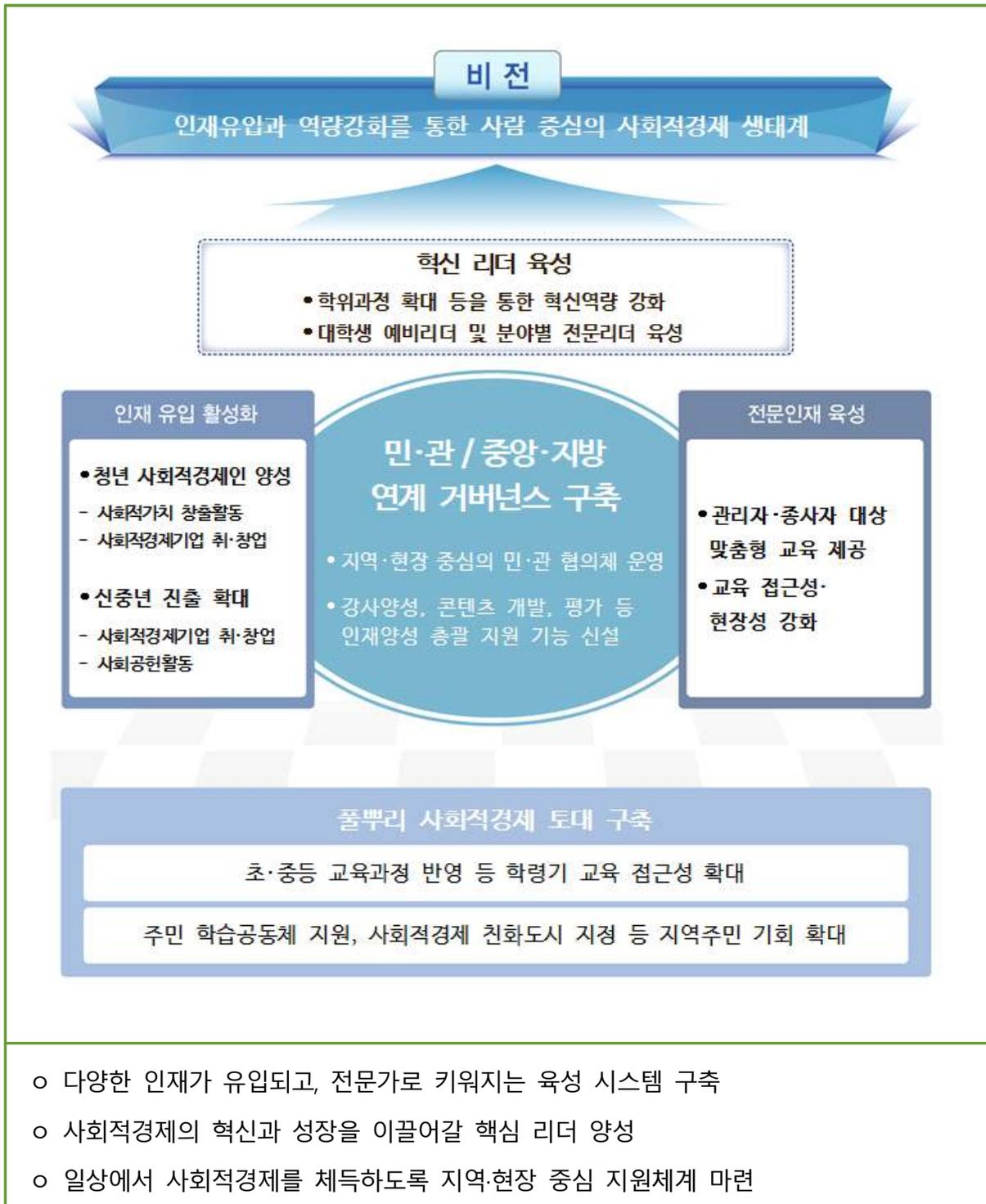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3) 정부_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 8일, 관계부처 합동)



4) 정부_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년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



II

연대회의의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1) 연대회의의 대선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

구분	연대회의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인정하는 체계로 구성,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음. 2. 대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학교 협동조합 지원방안 등의 범 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3.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공식 직제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여 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음. 4.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관계부처 T/F 구성 및 운영 (기재부 및 12개 관계부처 참여)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중기부 - (역할) 정책방향 제시, 쟁점조정·의결, 정책대안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부처간 협의·의견 조율 수행 등
<p>내 실 있 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환경의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가치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그러나 정부여당 및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및 비협조로 인해 20대 국회에서도 법률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	신협, 농협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상호금융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137개 신협을 지정 2. 신협이 타 법인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18.4.3~5.14)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위 예비심사('18.7.23)
1.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정비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금융기관 설립방안의 검토와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논의, 추진상황 없음. 2.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되어 있음. (협동조합이 금융,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기획재정부) 2.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조성은 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불가한 반면 민간 주도의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추진하고 있음(2018년 재단법인 설립추진 및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도매기금 조성)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를 필두로 여러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거래소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체적인 논의없음. 2. 민간 차원에서도 사회적거래소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제기 및 검토는 아직 없음.
	협동조합의 자조적 자금조달수단 확대 : 우선출자제도, 조합원차입제도의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 2월, 정부(안)으로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2.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검토 중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 2. 사회적 경제(조직) 간 연대협력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이종 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 허용 : 협동조합조합기본법 개정	1. 2018년 2월, 정부(안)으로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2.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검토 중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합조직 설립 허용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연합조직을 통한 공동사업, 기금조성, 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2.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직접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조합의 참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음. 3. 생협법의 경우,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준비 지연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법인세/취등록세 감면 등 사회적경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 법인세법, 지특법, 조특법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일괄 인정 -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2. 그러나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변경하여 협동조합 간 상생, 협력을 촉진	1.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었고 국회에 생협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법률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p> <p>3. 고용/창업/연구개발/금융 등 기업지원정책 및 공적자원 연계</p>	<p>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고용/창업/연구개발/금융 등 기업지원정책 활용도 제고</p> <p>사회적경제 조직이 차별 없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제도, 기업지원정책 및 공적자원(금융, 자금, 공간 등 공적 인프라)을 차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요소의 일괄 점검 및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책 정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 총액 대출목표 운영 중(2018년 350억원) 2. 2018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중 100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전용으로 편성 3. 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 상품 개편 4. 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확대 (2018년 1,000억원 예상) 5.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구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금융지원 시 활용)
<p>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p> <p>4. 사회적경제의 공공조달분야 및 사회서비스분야 참여 확대</p>	<p>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조달 입찰 기준 마련</p> <p>공공조달 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설정 및 실천</p> <p>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약계층 일자리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 2.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 신설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책임) 조정으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개정안 초안 마련('17.11월)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평가비중 확대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17.12.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격심사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근거 신설('17.12.28)로 우선구매 촉진 2. 입찰 가점 및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가점)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시행('18.1.1.)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발령·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시행('18.7.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확대 방안을 제시 (과제별 추진현황 5. 사회서비스 분야 참조)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	신협의 신규 설립 확대	1. 신협의 신규설립은 금융 당국의 반대로 인해 추진되지 않음. (부실, 군소 신협 난립 우려)
5. 신협의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신협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설립, 운영교육, 홍보,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	1. 신협의 사회적경제 지원기능 강화 : 거점신협 지정,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별도의 공공조직(각종 진흥원 등)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개별법 협동조합의 연합회(생협), 중앙회(신협) 등의 조직을 적극 활용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지연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체계의 개편, 개선에 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신협을 『사회적경제 특화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으로 활용	1.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거점신협의 지정 등 신협의 역할 확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1.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p> <p>1_1. 육아와 보육</p>	<p>1. 국가는 육아의 사회적 기반을, 사회적경제는 운영의 공동체성을!</p> <p>1)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p> <p>2)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의 10%를 사회적경제가 운영</p> <p>3) 보육료 지원 현실화, 누리과정 보조금의 중앙정부 책임 명확화</p> <p>4) 바우처 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지원으로 전환</p> <p>2. 육아부터 시작하는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의 확대</p> <p>1)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지원</p> <p>2)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p> <p>3)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p> <p>3. 학교 밖 방과 후 교실 활성화 : 생애주기에 따른 공동체 돌봄의 실현</p> <p>1)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 방과 후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p> <p>2) 협동조합 방과 후 교실의 활성화</p> <p>3) 지역사회 내 초등방과 후 및 체험활동 위주의 학교 밖 방과 후 클럽 활성화</p>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추진 (2018.3.12)</p> <p>3. 참고 : 보건복지부 _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1단계 : 노인커뮤니티케어 / 2018.11.20)</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1.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p> <p>1_2. 의료와 돌봄</p>	<p>1.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p> <p>1) 노인 주치의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70대 이상 노인에게 대해 적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후 전 노인계층으로 확대 적용 - 지불 보상방식 전환 :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두제로 전환 - 주치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 <p>2) 장애인 주치의 사업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 중증장애인 주치의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행 <p>2.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 병원비 무상지원 (18세 미만)</p>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추진 (2018.3.12)</p> <p>3. 참고 : 보건복지부 _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1단계 : 노인커뮤니티케어 / 2018.11.20)</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1.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p> <p>1_2. 의료와 돌봄</p>	<p>3. 지자체 수준의 돌봄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센터 설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위원회 설치, 운영 -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센터 설치, 운영하고 이를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p>4. 우리 동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설치 - 정부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2배 이상 확대 - 공공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위탁 <p>5. 수요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협동조합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교육훈련 지원 - 한부모가정 돌봄서비스, 산후관리서비스의 확대 및 돌봄협동조합 우선 위탁 	<p>1. 해당 업종/분야에서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추진 (2018.3.12)</p> <p>3. 참고 : 보건복지부 _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1단계 : 노인커뮤니티케어 / 2018.11.20)</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2.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체계의 확산</p> <p>2_1.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p>	<p>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도형 재생가능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목표 수립 -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p>2.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 단가의 보장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 안정적인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의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유희공간의 장기 임대 	<p>1. 해당 업종/분야에서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재생에너지 3020 (2017년 10월)</p> <p>1) 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 -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p>2) 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확대 : 협동조합형, 시민참여펀드형, 농촌태양광 확대 등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생산, 소비 체계의 확산</p>	<p>1.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정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존의 농림어업 분야 경영체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정책 및 지원대상 정비 <p>2.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단지, 마을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 -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 간 직접 거래 및 교류활동 활성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강화 : 농업의 부가가치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예 : 농축산물 가공사업, 도-농 직거래 사업, 농축산물 계약생산-책임소비 활동, 친환경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지역기반 연계분야 : 사회적농업 등의 내용 참조</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실현</p>	<p>1. 청년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택의 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택, 협동조합주택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청년주거 공급 확대 <p>2.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택지의 저렴한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대상을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나 비영리단체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주택(사회주택) 공급을 확대 -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예: 시세 80% 이하) 책정 등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 - LH, 지자체 공사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를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에 저렴하게 우선 공급 -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농촌의 기존 노후주택의 재생과 임대사업을 촉진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6. 주거환경분야 참조</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5. 사회적경제를 통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p>	<p>1.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지역사회, 마을교육의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확대 - 더불어 행복한 경제교육,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지역밀착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p>2. 협동을 통한 교육복지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과후·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의 설립 촉진 -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확대 : 매점운영 및 교복/교과서 공동구매 등 <p>3. 각급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학교협동조합활성화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효과와 공공성을 인정하고 비영리성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의 재정, 행정적 지원의 근거 및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학교 내 시설(시설, 토지, 물품 등) 무상사용 지원 근거 마련 - 교육부 내 학교협동조합을 주관하는 부서의 설치 및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 기타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회 보고 정기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타 연관 법률 등 개정 추진, 학교평가에서의 우대 가산점 부여.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상업화 제한, 교육기관 내 재화와 용역에 대한 비과세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교육부, 2018.9.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2)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 3)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예정)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 4) 대학생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6.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p>	<p>1. 불안정노동,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하는 현실의 개선을 위한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계약직 노동 등 불안정노동,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실업대책의 보장을 위해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을 도입, 활성화 <p>2.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및 기존 기업의 노동자 인수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협동조합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기업에 노동자가 직접 인수하여 경영과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필요한 기업인수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마련 (사례 : 이탈리아 마르코라법 등) -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같이 노동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여 우리사주가 될 경우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노동자협동조합에도 제공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일자리분과에서 기획한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p> <p>3.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소셜벤처 분야 참조</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p> <p>6.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협동조합의 활성화</p>	<p>3.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청년, 장기실업자, 장애인, 조기은퇴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 및 고용확대 지원 <p>4.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대학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 강화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4. 인력약성체계 강화 참조</p> <p>3.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소셜벤처 분야 참조</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p> <p>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형성</p>	<p>1.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의 자치력과 지역비지니스 수행 역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또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주민 사업체계 구축 <p>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국공유 재산의 사회적 활용 촉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인 주민조직이나 해당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역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국·공유지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 - 도시재생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 법률을 일관되게 정비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현황 참조 (6. 주거환경분야)</p> <p>3. 참고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2018.3) 참조</p> <p>1) 정책목표</p> <p>(1)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p> <p>(2) 도시활력 회복</p> <p>(3) 일자리 창출</p> <p>(4)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p> <p>2) 추진과제</p> <p>(1)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p> <p>(2)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p> <p>(3)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p> <p>(4)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p> <p>(5)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7.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형성</p>	<p>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유휴공간 신탁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가 유휴공간(건물, 주택,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신탁할 경우 재산세 등 세금감면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유휴공간 신탁이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취약계층, 예술가에게 재임대하여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유휴공간 신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공동체토지 신탁(CLT) 육성 : 공동체토지 신탁을 통해 지역사회(비영리조직 등)가 토지를 사실상 영구히 소유(장기신탁)함으로써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이 빈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집주인과 임대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 2. 참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현황 참조 (6. 주거환경분야) 3. 참고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2) 도시활력 회복 (3) 일자리 창출 (4)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2)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2)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3)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 (4)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5)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형성</p>	<p>4.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지역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p>5.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준비부터 마을정착까지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 플랫폼 마련 - 농어촌 정착 기반 확보를 위한 후견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지역기반 연계분야 : 사회적농업 등의 내용 참조</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특별제안</p> <p>1.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 육성하는 헌법개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질서의 기본이 되는 가치로서 자유 및 창의와 함께 상생을 기본 가치로 삼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규정으로 개정 - 농어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육성과 자율적 활동 및 발전을 보장한 헌법 제123조 제5항을 확장하여 1987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자조조직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 	<p>1. 정부 여당의 개헌(안)에는 제안내용이 반영, 포함되었으나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p>

구분	연대회의 정책제안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p>특별제안</p> <p>2.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재벌에 편중된 경제, 산업, 기업정책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수립 - 사회혁신, 포용적 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 불공정거래 및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정과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2.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3.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 추진 4.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의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추진 중 (서울시, 경남도 등) 5.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 추진 (2018년 9개 조합 선정)

2) 연대회의의 사회적금융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

구분	연대회의의 정책제안 (2017.9)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2018.2)	
정책자금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1.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일부를 <사회적 경제 지원자금>으로 편성 및 운용 - 2021년까지 정책자금 1조원 집행 -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사회주택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도 정책자금과 지원대상에 포함 - 자금 심사 및 집행은 신용협동조합, 민간 사회적금융회사와 협업 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반영내용 - 신보가 5년간 5천억 조성 등 정책자금이 크게 확대될 예정 -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등이 확대될 예정 -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 확대는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제안은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 업종별 제한 철폐, 비영리법인(사업)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 여성기업 지정요건 변경 등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음	
	3.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자펀드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운용기준 마련 - 융자형태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구 신설 - 기존 사회적 금융회사가 운용사(GP)가 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별도 운영팀 신설, 적절한 성과보수체계	반영내용 -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의 자펀드를 확대하고 기대수익률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용기반 마련 - 최근 전문투자형 PEF, 벤처,창업전문 경영참여형 PEF 등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임팩트 투자사의 참여기회 확대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 확대는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나, 사회적경제에 알맞은 투자기구 마련에 대한 제안은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사회적금융을 위한 적합한 투자기구 마련도 고려되어야 함	
	공제 및 기금을 통한 사회적금융생태계 조성	1.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적 민간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이 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는 경우 세제 지원 - 사회적책임투자(SRI) 연계, 공공기관 사회적가치평가와 연동, 공익신탁 연계방안 등 조합원이 아닌 출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반영내용 - 연구용역을 통해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재투자제도를 도입을 통해 민간기금 조성 촉진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일부 반영 - 연구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결정

	2. 당사자 조직의 공제기금(또는 공제조합)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 마련 - 조성된 공제기금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매칭 - 사회적경제조직이 출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 - 사회적 경제기업 혹은 종사자 대상으로 손해공제, 생명공제 등 다양한 공제사업 허용 - 공공입찰시 공제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금액 조성 - 중앙정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사회적경제조직의 민간기금, 민간 사회적금융사에 매칭·운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소매금융기관이 운용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3천억원 규모를 목표로 사회적가치연대기금(도매기금) 조성하고, 소매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민간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추진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기금은 정부의 반대의사가 강해 추진되지 못함. - 지자체 별 사회투자기금 등 조성,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가치연대기금은 민간기금으로 추진
상호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지원 강화	1. 공동유대 확대, 신규설립 허용, 조합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광역단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거나, 거점별 단위신협을 지정하여 사회적 경제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공동유대 확대 - 신협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 신협의 신규설립을 허용하고,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신협(단체조합) 설립 허용 -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협 정조합원(법인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공동유대를 이탈하더라도 정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개선 - 신협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목적의 법인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 유도 - 신협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 거점신협의 지정, 운영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설립허용은 고려되지 않음
	2. 상호금융기관의 기업평가시스템, 위험관리규정, 감독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제도 개선 - 신규 대출상품 출시 - 단위신협의 신용보강,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기금 조성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신협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 마련
		반영수준에 대한 평가
		일부 반영

	정책자금 대출 취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스템 마련, 감독규정 개정, 위험관리규정 개정은 제외 - 신탁의 정책자금 운용은 제외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의 자 체 자 금 조 달 역 량 강 화	1. 협동조합 출자제도 개선방안 연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자본증권, 우선주 등 협동조합의 다양한 자금조달방안 연구하고, 이 경우 조합원 1인 출자좌수를 30%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허용 	반영내용
		본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정부발의안)에 반영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출자 조합원 제도의 경우 본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정부발의안)에 반영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과제로 추진 중
	2.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메자닌 투자, 용자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집행사원(GP) 자격 기준 완화 - 사회적 경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P2P대출회사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저리 용자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은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대부업법 개정)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 제시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소매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은 제외 - P2P 활성화방안 제외
사 회 적 금 용 성 장 기 반 강 화	1.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등급을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 - 공공조달, 지원사업에 활용 2. 사회적 경제정보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및 폭을 확대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맞춤형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협의회 방식의 협력관계 구축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 공공데이터 개방은 제외
		반영내용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3. 사회적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자격제도를 통한 전문가 양성 	반영내용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요도가 떨어져서 언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금융 인재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은 제외

Ⅲ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과제별 추진현황 (정부 자료)

1. 통합지원체계

①-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정부대안 마련(~ '17.10월)
- 법안소위 위원 대상 법제정 필요성 설명 등 입법노력('17.9월 중순 ~)

①-2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 설치

- 사회적경제 관계부처 T/F 구성 및 8회 운영
 - (구성) 기재부 및 12개 관계부처* 국장이 팀원으로 참여
 - *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중기부
 - (역할) 정책방향 제시, 쟁점조정·의결, 정책대안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부처간 협의·의견 조율 수행 등

①-3

사회적경제 통계 기반 구축

-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업체정보 현행화(~'18.7월)
- 금년 시범 작성을 거쳐 '19년에 국가승인통계로 공표 추진 예정

2. 금융접근성 제고

②-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 상품 개편 완료 ('17.10.25)
- '18년 중 4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향후 재정 지원 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계정 신설 예정 ('18.1~7월까지 591억원 지원)

<지역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및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으로 확대 시행('18.2.22~)
- 향후 전문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개별기업 홍보 강화 및 16개 지역신보 별 지원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내실화

②-2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보증기준 개선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신용보증 심사기준표를 마련('17.10.25)
 -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18년 중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 예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
 - 연구용역 완료('18下) 후 평가모형 구축('19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심사 및 금융지원 시 활용 예정

②-3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목표('18년 350억원) 운영
- '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실시('18.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 '18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중 100억원(목표대비 50억원 상향)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전용으로 편성 ('16년 15억, '17년 17억)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은 '18.9월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19.1월부터 정책자금 지원 예정

2-4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개발완료('17.12월) 및 평가지표 운영 중('18.1월~)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평가외에 사회적경제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

2-5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사회투자펀드'를 조성(사회적기업펀드 100억, 임팩트투자펀드 200억)
- 펀드운용·관리 평가시 '사회적성과'를 평가, 우수 사회적기업에 적극적 투자 유도, 운영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2-6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 민간의 참여와 투자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정부가 보상하는 체계 확산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
 -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매뉴얼) 마련·배포('17.10.),
 - * 지자체·민간 대상 설명회('17.10.) 및 권역별 심화 설명회('17.11.3회),
 - *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17.12.),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입법안 마련 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18.12월)

2-7

사회적기업 클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 사회적기업의 클라우드펀딩 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 접근성 제고
 - 클라우드넷 內 사회적기업 정보사이트 오픈('18.1월)
 -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4월)
- 제도 운영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2-8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 기부금인정제도 도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258개)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일괄 인정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면제, 기부자는 손금산입(세액공제) 혜택 가능토록 조치('17.10.31)

2-9

감면조례를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세제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유도
- 지자체별 감면조례 신설 현황파악('18.3월, 28개) 및 지속 관리

2-10

사회적경제기업 등 국유건물 입주시 우대

-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작업 중(기재위 법안소위 계류중)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동법제정을 통해 우대조치 적용 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등 확정 필요

②-11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 확대

-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PC, 책상 등) 무상 양여 대상 확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 기여
 - * 불용품 현황 조사 실시(~'17.11)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 부칙으로 물품관리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 마련(금년 중)
- 금년 중물품관리법 개정안 검토 및 정부입법계획 제출 예정

②-12

신협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투자 확대

- 신협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확대유도
 -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18.4.3~5.14)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개위 예비심사('18.7.23)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제출('18.10월) 예정

②-13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검토
 - * 협동조합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17.4~9월, 인하대.금융연구원),
 - * 우선출자 제도를 반영한「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마련 및 입법예고('17.10.19~11.29)
- 연내 개정안이 국회심의 완료토록 대응 및 하위법령 준비(연중)

②-14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

- 민간 주도로 사회적금융 전용기금(5년간 3,000억원 규모)을 설치하기 위해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구성·운영(2.28~, 총7회 회의)
 -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용기금의 법적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결정
- 전용기금의 기능,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 추진단 내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금년중 설립·운영 예정

2-15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
- 추진단 중심으로 인증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기금 설립 일정과 연계하여 마련 예정

2-16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 추진단내 기금설립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정

2-17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

-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 민간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정관변경 실시('18. 6월)
- 신규 민간 사업수행기관,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7월~)

2-18

신협 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기금 설치 및 전용상품 개발을 통한 사회적금융 역할 제고
 - * 신협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예보료 인하('18.2.23)
 - * 기금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신협법 개정 추진
 - * 조합별 기금 출연 동의서 취합(7월말) 및 기금조성(8월말)
- 향후 전용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 마련(9월말), 기존 대출상품 취급기준 완화(9월말) 및 신협 사회적금융역할강화 방안 발표('18.下)

2-19

새마을금고 역할 강화

- 지신보 연계 보증부 대출을 통한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방안」 연구용역 실시(금융연구원, ~'18.6월)
 -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협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조직 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시범지원 실시
- 사회적경제조직 대출 전용상품 실효성 검토를 거쳐 시범실시 추진예정

2-20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 * 금융위원장 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1차 회의 개최('18.4.4)
 - * 담당기관별 추진실적 점검(4.20, 서면)
- 향후 정례적으로 회의 개최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공통과제 진행 관리 예정

2-21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심사평가 개선에 활용
 - * 3.23일 1차 DB 개발일정 협의를 위한 Kick-off 미팅 개최
 - * 7.16일 신정원을 통한 정보공유 확대 방안 협의(금융위, 신보, 신정원)
- 정보공유 포맷·세부내용 및 표준 정보동의서 검토 → ('19.상반기) DB 구축 착수 예정

2-22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사업수행기관지원위원회' 설치(안) 및 운영세칙(안) 마련(4월),
 - * 위원회 개최, 민간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금 배정 심의(6월)
- '18. 7월 현재 신규 사업수행기관과 지원계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중

2-23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엑셀러레이터 참여 유도
- 사회투자펀드(임팩트투자 부문) 운용사로 사회적기업 특화 엑셀러레이터인 크레비스 파트너스를 공동 GP로 선정('18.4월)

2-24

정부·공공재원의 선별기능 보완방안 검토

- 정부·공공재원으로 사회적금융 지원시 민간자금과의 매칭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한 선별기능 보완을 추진
 - 신보·지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 투융자 레코드·운영경험 축적중
- 사회적금융협의회의 투융자 DB 구축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경험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 검토

2-25

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 성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사회적금융협의회로 송부하여 별도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조치
- 기관별 18년도 성과계획 수립('18년 상반기) →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배포(협의회, 18.4분기) 및 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 홈페이지 게시('19.1분기)

3. 판로확대 지원

③-1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

-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 신설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책임) 조정으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
 - * 국가계약법 개정안 초안 마련('17.11월)
 -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평가비중 확대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17.12.28)
-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예정 : '18년 하반기

③-2~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및 구매비중 확대

- 적격심사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근거 신설('17.12.28)로 우선구매 촉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3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18.5월), 공포('18.5월)
- 입찰 가점 및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
 - * (입찰가점)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시행('18.1.1.)
 -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발령·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시행('18.7.27.)

③-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공유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 * '17 권역별·업종별 공공구매 행사 실시(설명회 4회, 교육 4회, 상담회 2회 등)
 - * 공공구매 지원기관 전국 16개 권역 선정 및 운영
 - * 사회적가치 실현 지역 순회 워크숍 실시(8회)
- 전국 공공구매 지원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구매연계 및 우수사례 발굴 추진(~'18.10월), 사회적기업·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교육 추진(~'18.11월)

3-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확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지표 개편
 -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 ('17.12월) 및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18.4월~7월)
- '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 예정(~'18. 12월)

3-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통합온라인 사이트 확대·개편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분석·설계 완료, 개발착수
- 통합플랫폼에 등록할 상품 발굴 및 콘텐츠 제작(~'18.10월) → 사회적경제기업·공공기관 등 이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18.10월~)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정식 운영('18.12월)

3-8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존 유통채널 연계 강화

- 대형 유통채널 연계 및 맞춤형 유통채널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 '18년 현대·롯데백화점 설 사회적기업 특별전(1회, 67백만원)
 - '18년 GS홈쇼핑 등 기부·순환방송 송출(75회, 962백만원)
 - '18년 사회적기업 자체 유통채널 진출 지원 3차 대상자 선정 및 지원(28개소)
- 사회적기업 자체 유통채널 진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18.9월), 유통채널 진출을 위한 MD상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추가 개최(~'18.10월)

3-9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18년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 ('18.7.12~7.14, 대구 EXCO)

3-1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17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한 48개 상품개선 및 유통채널 연계 및 입점
- 상품 개선 실행 및 유통채널 연계 예정(~'18.11월)

3-11

사회적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평가지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대상 평가 시 가점부여 및 밀착지원
 - 주요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수출마케팅 우대 선정
 - 아트콜라보 매칭·상품화 마케팅 사업 우대 선정
 - 수출역량별(수출역량강화, 수출첫걸음, 수출확대)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 서비스 지원
- 아마존 입점 전주기 프로세스(판촉·물류 등) 지원 및 대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정, 무역관 전시 및 현지홍보 실시

3-12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 및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컨소시엄을 우대선정하고, 사전준비→현지활동→사후관리 까지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과제를 우대선정하고, 한류마케팅, 해외홈쇼핑입점 등 지원
- 우대선정 근거마련을 위한 지침 개정 및 관련제도 홍보('18.3~),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18.상~)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4-1~2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사회적경제 교육내용 자료 개발진 선정('18. 4) 및 사회적경제 교육내용 자료 개발진 합동 워크숍('18. 6)
- 사회적경제 관련 교원연수 실시('18. 7~8) 및 초.중.고 학교급별 사회적경제 교육내용 자료 개발·보급예정('18. 12)

4-3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이 사회적경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 진행(국평원, ~'18.4)
 - 학교협동조합 관계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18.5), 관계 부처·부서 등 의견수렴('18.7)
-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18. 9)

4-4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 보급 확대

- 노인의 재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 반영
 - 양코르라이프캠퍼스(구. 노인취업교육센터) 추진계획 수립('18.2월)
- 노인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콘텐츠 마련 및 강사 양성('18년) 및 양코르라이프캠퍼스(구.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교육 실시('18년 중)
- 새일센터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지속실시, 새일센터 종사자 워크숍 개최 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소개('19.2월)

4-5

공무원,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신설(인사처)

- 공무원 일반 및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신설, 강화
 - 국가인재원 각급 기본교육과정(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자과정 등) 내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 관련 교과목 반영
 - 전문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사회적가치 이해과정('17.11)' 및 '일자리 경제 과정('17.9, '17.11)' 운영
- 부처별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과목 편성 및 연중 운영, 사회적경제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추진('18년)
- 조달전문교육과정에 '사회적가치' 교과목 편성 운영(계속)

4-6

사회적경제 관련 평생학습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프로그램 확산 및 사회적경제조기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공모('18.4~5) 및 선정('18.6)
 - * 신규 지정 7개 시·군·구, 특성화 지원 13개 시·군·구
-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속 실시('18.7~)

4-7~8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 인력풀 구축

- '17~'1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 운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 공직자 및 민간전문가 91명 양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의를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 공개('18.8월)

4-9

사회적경제 리더 과정 확대 운영

-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으로 변경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대학 선정 및 운영
 - 현재 4개 대학 운영 ('18년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국민대, 충북대)

4-10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 연구개발·학부개설 등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 현재 한양대와 숭실대 학부과정 개설('18.3월) → '19년 신규 3개 대학 지정, '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문제해결형(사회적경제 등) 유형 등 신설
 - '19 예산안 반영 추진('18.7.~8.) → 예산 반영 시 사업추진('19.상반기)

4-11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지역 대학·선도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기관 대상 정책 홍보 (~'18.8월)
-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직업훈련 실시 예정 ('18년 下)

4-12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장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18.7.3)
- 종합계획 추진과제 이행 및 인재양성 정책협의회 구성(~'18.12)

4-1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및 유형별 지원 차별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최종 선정 (565팀, '18.2월)
 - 추경 반영을 통한 추가 창업팀 선정 (128팀, '18.7월)
 - KOICA 등과 연계한 해외진출형, 전문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 등
- '18년 7월 현재 창업팀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4-14

‘소셜캠퍼스 온’ 조성·운영

- 창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하고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
 - ‘17년 서울, 부산, 전주 캠퍼스 운영 (159개기업 입주)
 - ‘18년 3개소 추가 조성(자치단체 입지 수요 조사 및 현장 실사 및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및 입지 선정 (‘18.~4월) * 경기, 대구, 대전
- 디자인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18.7~11), 입주 및 운영 (‘18.10.~)

4-15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 ‘18년 상반기 공모·심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680개소 선정
 - * (예비)사회적기업 636개, 사회적협동조합 19개, 마을기업 25개
- ‘18년 하반기 지자체 사업개발비 추가 공모 심사 지원예정 (‘18.8월~)

4-16

창업 아이템별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지원

-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계획 수립(2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 공고(2차) 및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선발·지원(5월)

4-17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 유형별 R&D지원

-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확산 지원
 - R&D 신규과제 20개 선정완료(‘18.6월)
 - 커뮤니티비즈니스 추가공고 신규평가위원회(‘18.7.월, 3개 추가선정)
-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예정(‘18.下)

4-18

사회적경제기업의 R&D 기획역량강화교육 우대

- R&D 전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역량강화교육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수요조사, 신청 사회적기업에 방문형 교육 실시 및 수시 접수에 따른 교육 시행('18. 상)
- '18.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및 교육계획을 관련 지원기관에 안내하여 교육 참여 독려

4-19

대학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및 질 제고

-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에게 사회적경제 관련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
 -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형) 장학생 전원 사회적 경제 관련 직무 교육 의무화 완료 ('18-1학기 창업지원형 선발 장학생 267명)
 - *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시행계획」 반영 완료 ('18.4.9.)
- 사회적경제 포함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대학 컨설팅 지속 실시

4-20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유형화, 국가시책사업화 준비
 - 청년실업 문제 관련, 추경 통과(5.21.) 후 공모·심사, 추진체계 구축 등을 거쳐 사업시행(7월~)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수립·발표(3.15.)
-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성과분석 및 후속조치(지속)
 - * 민관합동 TF 주관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 주기적 홍보(7월~)

4-21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 폴리텍 內 신중년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정 운영,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베이비부머 등 퇴직인력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 (폴리텍) `18년 서울강서·정수·인천·대구 신중년 특화 캠퍼스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 `22년까지 34개 쏘 캠퍼스로 확대
 - (민간자원연계) 매년 신중년 200명 대상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 제공,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으로 연결
- 향후 동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지속 확대 실시
 - (폴리텍) `22년까지 34개 쏘 캠퍼스로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총괄관리자 양성과정) 사업 성과에 따라 지속 사업으로 확대
 - (민간자원연계) 매년 2억원씩 `22년까지 10억원 투입(신중년 1천명 취업연계)

4-22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 창업과정을 확대 지원

< 시니어 창업입문과정 운영 세부현황(상반기) >

운영기관	지역	신청인원	수강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주)상상우리	서울	58	25	22	88

- 중장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 창업과정 확대 예정 (`19년 예산) 60백만원(2개소×30백만원)

4-2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퇴직인력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확대하고 재능기부뱅크·프로보노 허브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
 - (전문위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등 지원, 향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전문위원 pool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정

- (재능기부뱅크.프로보노) 프로보노 등 재능기부자와 사회적경제기업 수요 검색, 매칭, 평가 등의 기능을 갖춘 온라인사이트 재능기부뱅크 운영, 향후 대기업, 직능단체 등과 협력하여 프로보노 DB를 확대 구성하고, 1:1멘토링, 교육, 맞춤형 지원(ex. 외국어 통번역, 상품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매칭 및 활동 지원 예정

4-24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17년부터 5일이내의 중소기업탐방 사업 추진 중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탁기관(37개소)이 1일 5시간~5일 이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참여청년 모집·기업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1천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확대할 예정

4-25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봉사활동을 종료한 귀국단원에게 KOICA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18년 하반기 중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교육 제공 및 사회적경제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우수인재 추천, '19년 하반기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개최 예정

4-26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 대학생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협 활동배경과 다양한 학내 협동조합 활동 등 교육 실시
 - '18년, 한국 대한생활협동조합협의회 교육과정 지원(2과정)
- 향후 연간 대학생협 관련 교육 3과정 내외 지원 예정
 - '19. 3월 사업공고 → 4~5월 교육기관모집·확정 → 6월~10월 교육실시

4-27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등 업무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8년 시범사업으로 중간관리자 대상 통합실무역량강화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예정 (8~10월)
- '19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추진
 - 세무·마케팅·인사 등 필요 역량별로 모듈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통해 중간관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4-28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사회적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 탄력적으로 운영 검토
- 연 1회 수요조사 실시 후 맞춤형 훈련 제공 예정

4-29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을 운영('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하여 민간 전문교육 콘텐츠를 탑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 '15~'17년간 무크 선도대학(매년 10개, 총 30교)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대학 등과 협력하여, 총 324개 강좌 개발·제공
- 사회적 경제 우수강좌 발굴·탑재(~'19.상.) 및 K-MOOC 사회적경제 분야 강좌 공모 및 선정 및 운영 예정('19년)

4-30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 중간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중심 전문교육 확대
 - 훈련 제공시 시설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등 지원
-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모델 지속적으로 발굴 예정

4-31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 (10년~) 사회적기업 → (18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사업개발비를 통해 종사가 역량강화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4-32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 (18년) 교(원)장 자격연수에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 포함 운영(~18.12.)
- (19년) 교(원)장 자격연수 기본계획 작성 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추진

4-33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 (전국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협력사업 및 워크숍,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
 - (19년) 장기적으로 전국네트워크 및 지원센터의 재정자립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업종네트워크) 공동프로젝트 외부기관과 연계 추진(6건) 및 지원서 작성지원(4건) 추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시범추진
 - (19년) 업종별 공동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를 사회적경제 주요 업종으로 확대

4-34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 사회적경제 영역의 업종별 직무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부족함에 따라 현장과 지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제공

기관명	추진 교육내용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 교육업종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로봇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 돌봄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케어(치매돌봄) 기초교육 추진

- (19년)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주요 업종으로 확대 예정 (18년 2개소 → 22년 20개소)

4-35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 온라인 플랫폼, 네트워킹 기능을 갖춘 '인재양성센터' 설립
- '19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인재양성 정책 연구 및 패널 조사,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인프라 기능을 갖춘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로 연수 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설립 준비

5. 사회서비스 분야

수-1~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위탁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주체 명시, 공정경쟁을 위한 위수탁 규정(과도한 재정부담 기준 지양, 문제 법인 참여제한)을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하여 배포 완료('18.1월)
- 추후 사회적경제 위탁 활성화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보급('18년)

수-4~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제공기관 정보접근성 제고
 - 장기근속 장려금의 근속기간 산정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수가 고시 제11조의4, '18.1.12 시행)
 - 사회적 가치 관련 품질평가지표 공표 및 제공기관 설명회 개최('18.7월)
- 향후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방안 추진 및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확대 및 이용자 품질평가체계 구축('18년)

수-6~7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역서비스 품질제고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강화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활동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도 및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지자체 평가·포상 실시('17.9~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개정('18. 하반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조직 이용 활성화 지속 독려(연중)

수-8~9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자활기업 및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규모화·전문화 지원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 시행('18.5월),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18.8월)
- 2018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지정(~18년 하반기)

수-10~11

新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제공

-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충
 - 교육·컨설팅 확대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진행
 - 관련 지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개정('18년)
- 향후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자체 독려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통한 '사회서비스 진출 사회적 경제기업' 제공기관 컨설팅 추진 및 실적관리 지속 실시 예정

6. 주거환경 분야

6-1~6

주거환경 부문

- (도시재생)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지원 상품모델(수요자중심형)을 개발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17.4분기~)
 - '18년 도시재생 기금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시행 중
- (임대주택)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기금 및 보증 지원방안 마련*, 토지임대부 시범사업 추진 및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6월)
 - 향후 수원조원 시범사업 착공 및 고양삼송 입주자 모집('18.12월), LH 매입임대 운영관리 위탁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18.8~9월) 예정

7. 문화예술 분야

7-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창작활동 기반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을 실시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재원조성 모델 개발 지원사업 추진 (25개 기업 선정·지원)
- 향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홍보 지속 실시

7-2

사회적경제기업 유희·공공시설 지원(사용료 할인)

- 공연연습공간 사용료 할인, 우선사용권 부여 등 관련, 내부지침 검토(~'18.6월)
- 공연연습공간 사용료 할인, 우선 사용권 부여 등 관련 규정 수립 및 시행(~18년.7월)
 - 지침 마련 후 지역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공연연습공간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22년)

<작은미술관 확대>

- '17년 작은미술관 2개소 신규 조성(1·2차 공모 각 1개소) 및 작은미술관 7개소(누적) 운영 지원, 작은미술관 확대 운영 방안 연구 완료('17.11.~'18.4.)
- 향후 작은미술관 지원 체계 정비, 작은미술관 간 협력 증진
 - 문예회관 등 지역 유휴공간의 작은미술관 활용 추진('18.4.~.12.)
 -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회 운영, 발전 및 협조 방향 모색(분기 1회)

<작은영화관 시설 확충>

- '17년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지속추진

구 분	대상지역	비 고
신 규	8개 지역	강원 315백만원(고성 225, 정선 90), 경기 500백만원(포천), 경남 1,550백만원(함안 850, 산청 700), 충남 500백만원(청양), 전남 500백만원(화순), 제주 500백만원(제주)
계 속	5개 지역	강원 1,100백만원(횡성 400, 양구 400, 인제 300), 경북 450백만원(칠곡군 250, 울진군 200)

- '18년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예정

구 분	대상지역	비 고
신 규	6개 지역	경기 500백만원(연천), 경남 1,750백만원(고성 1,000, 하동 750), 경북 358백만원(의성 100, 봉화 258), 충북 600백만원(보은)
계 속	3개 지역	강원 685백만원(정선 410, 고성 275), 경북 150백만원(칠곡)

<실버극장 시설 확충>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버극장 시설 확충 검토
 - (전문가 의견청취) 실버영화관(舊 허리우드 극장) 및 안산명화극장 운영자(대표이사) 의견 청취('17.10월, '18.1월)
- 고령화 시대에 실버극장 활성화 등 어르신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 마련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한 '19년 '어르신 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예산확보 추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홍보 및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모집 공고 및 선정('18.1월~2월)

-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알림 노력은 지속하나 향후 도서관의 기본가치인 공공성을 기반한 경우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재검토

<토요문화학교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 토요문화학교('17년 186억 원, 800여 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 분야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18.5월~)

7-4 관광두레 조성(지역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 육성)

- 관광두레를 통한 지역의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고용창출*(누적/명)	76	243	290	374	495

- * 고용창출(누적) :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주민사업체의 상시 근무인력수
 - 관광두레 선발 지역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역별 주민사업체 발굴 확대하여 '22년 까지 주민사업체 1,125개 육성
 - * 주민사업체(누적) ('19년) 475개 → ('20년) 670개 → ('22년) 1,125개
- 관광두레 '지원기간'에 집중되었던 육성체계를 『준비 > 창업(지원기간) > 유지·발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18년 중)

7-5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확충

- 18년 스포츠클럽 1차 공모, 7개 클럽 선정(총63개소)
 - * '13년 8개소, '14년 9개소, '15년 12개소, '16년 7개소, '17년 20개소 선정 56개소
- 가칭『스포츠클럽육성법』제정 지원(의원입법, '19년)
 - '22년까지 229개소로 확대하여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완성 목표

7-6 지역문화재단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지역문화재단 문화행사·공연 공모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향후 예산확보('19년~) 시 지역문화재단-사회적경제기업 공동 지역특화 문화행사 개최 지원(지역별 10개소 내외)

8. 프랜차이즈 분야

8-1~2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및 연구용역

- 「'18년 프랜차이즈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계획 공고('18.2월) 및 9개 조합 선정 및 사업 수행 협약체결
- '17년 육성사업 지원조합(3개) 성과조사(~'18.12월) 및 '18년 육성사업 선정 조합 공동사업 지원 예정(~'18.12월)

9. 소셜벤처 분야

순-1~4

소셜벤처 육성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18년 1천억원 규모, 6개 운용사 선정)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팁스(TIPS) 운영사 선정('18.7월 1개)
 -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 향후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통해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공고 및 사업관리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추진

순 - 5~8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 '18.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된 소셜벤처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중이며, 전문가 협의회 주도로 판별 가이드라인 개발 중
 - *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대기업 담당자(SK 행복나눔재단, 현대자동차, LG 등), 소셜벤처 지원기관(기보), 학계 등 총 18명
-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 모형 개발을 완료예정('18.8월)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는 서울 성수동에 건물 임차하여 개소('18.하)
 - 소셜벤처 정밀실태조사는 '19년 신규 예산 반영하여 추진('19.상)

순 - 9~11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 '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예산 협의 중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 확보('18.하) 및 소셜벤처 전문지원 기관 및 지방 혁신기관 선정 예정('19.상)

순 - 12~15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방안 구축
 -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시 서류심사 가점사항으로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항목 신설('18년 공고문에 반영 완료)
 - 소셜벤처 오픈바우처 지원사업 공고('18.9월)
 - 가을학기 (예비)창업자 550명 추가 선발(8월)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12개 신규 개소('18.9월)
- 우수 청년 소셜벤처와 대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협의('18.하)

순 - 16~18

소셜벤처 성장 촉진

-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위해 '18년 상반기까지 보증 97억원, 융자 176억원 공급하여 원활한 금융지원 수행 중
-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 (보증) '18년 300억 → '19년, 700억원 (융자) '18년 350억 → '19년, 400억원
-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구축 이후 '세부추진방안** 협의 ('18.하)
 - *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가치평가모형 개발,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 운영
 - ** '19년 'R&D기획지원사업'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추진계획 반영

순 - 20~21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 확산

- 소셜벤처 성공사례 포상·홍보 및 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내 CSR 과정 설치를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 확산

- 청소년비즈쿨 지도교사 직무연수 커리큘럼에 소셜벤처 성공사례 및 사회적 기업가정신 특강 포함('18.7월)
- 상반기 중 440개 창업강좌 (정규강좌 403개, 비학점 강좌 37개)를 통해 4,256명에게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기업가정신 포상 신설, 행복한 기업가정신 가족캠프 개최, 청소년 비즈쿨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예정('18.하)
- 또한 연내 500개 이상의 창업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소셜벤처 관련 교육과정을 10% 이상 운영할 예정('18.하)

10. 지역기반 연계 분야

10-1,2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집중 육성

- 마을기업 제도정비와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마을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민관 협약식 개최(행안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주)이베이코리아 등)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17개소) 발굴·육성(6월말)
- 마을기업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선정 및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 예정('18. 8월중)

10-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유희·공공시설 지원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안 최종 확정을 위한 TF회의* 개최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
- 입법예고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18.하반기중)

10-4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유도

- '18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9개소, 4.30~) 및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수행(5.10~)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된 포럼 구성·운영(8월~)
- 사회적 농업법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 병행(7.14~)
- 「사회적 농업법」 국회 제출 예정(12월)
 - * 사회적 농업의 정의, 유형,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지원근거 마련 등

10-5

어촌사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산분야 진입 활성화를 통한 어촌사회 기반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어촌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전국 어촌계 협의회 구성('18.5)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심사 완료('18.7)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한 「수협법」 개정 추진('18.8, 국회제출)

10-6

수협 담보·신용대출 적격성 심사 시 우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협 담보·신용 대출 적격성 심사 별도기준 마련('17.12)
 - * (예)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액이 20억원 이하 신규·연장, 신용등급 5A 이상인 경우 일반기업과 동일한 금리 기준 적용(여신지원 실적 17.7억원 / '18.6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관련 대출상품 개발('18.9)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취급 기준* 완화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조건 신설예정('18.12)

10-7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강화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현장컨설팅 26건 지원 및 '18년도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전용관 운영 개시
 - 오마이컴퍼니,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농사펀드, 크라우디 등 4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45건 청약, 43건 성공, 총 198백만원 모집
- 농협-지자체-민간 기금 조성에 관한 법률 검토(완주군)

10-8

공영홈쇼핑 방영지원, 농협 판매장 입점 등 판로지원

- 공영홈쇼핑 채널과 농협 보유 판매망 공동 활용을 통한 판로지원
 - 공영홈쇼핑 개정으로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 시 가점 부여 ('18년도 사업자 14개소 선정(4.12), 방송 진행 중)
 - (수수료 인하) 8%의 낮은 수수료율 적용 (기존 23%)
 - (절차 간소화)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면제
- 농협 측과 하나로마트 활용 방안 지속 논의

10-9,10,13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컨소시엄 구성·운영>

- 시도별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판로확대 지원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장 지원
 - 시도별 사회적경제 육성이 필요한 5대 분야 22개 품목 도출 완료('18.1월)
 - '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1차(2월)·2차(4월) 및 추가(5월) 지원계획 공고
- 하반기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예정('18.下)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및 기술지원>

- 추진주체·자금조달·수익배분 등에 대한 유형별 사업표준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 사업성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기 운영('17.7~)중인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10-11,12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한 판로지원(산업부)

- 'Korea Sale FESTA'의 주요행사인 '중소기업 제품 할인전'에 사회적경제 기업 및 청년물 제품 참여 지원
 - 사회적 기업, 청년물, 우수 중소기업 등 총 48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특별 판매전 개최 및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별도 홍보관 운영
- 2018 Korea Sale FESTA 개최 예정('18.9~10월)

IV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 조사기간 : 2018년 9월 ~ 11월 9일
- 조사방법 :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 (97건) 및 온라인 설문조사 (33건)
-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자수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차 조직)	69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합회 및 네트워크 (2차 또는 3차 조직)	1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권역별지원기관, 광역/기초 지원센터)	40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 지원조직 등	4
무응답	5
총계	130

1)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평균
정책일반전체			6.37
정책일반 1	정책에 대한 공감 정도	128	7.39
정책일반 2	정책의 구체성 정도	125	6.09
정책일반 3	정책의 실제 효과성	128	5.48
사회적경제역량전체			5.36
사회적경제역량 1	사회적경제 현장의 정책역량	128	5.20
사회적경제역량 2	사회적경제 현장의 사업기획역량	127	5.53
사회적경제역량 3	사회적경제 현장의 연대와 협업역량	128	5.23
* 비교 : ① 매우 낮음 ~ ⑤ 보통 ~ ⑩ 매우 높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감정도는 7.39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구체성 정도는 공감정도에 비해 낮은 6.09,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낮은 5.48의 점수를 부여
- 사회적경제 민간의 역량에 대해서는 정책역량, 사업기획역량, 협업역량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여 민간의 역량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제기

- 이를 종합하면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아직 현장의 필요,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의 구체성은 더 제고되어야 함.
- 또한 정책의 실제 효과성은 정책 그 자체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정책, 사업기획역량을 높여 정책 활용도, 제도 및 정책과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

2)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 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총 130 명)
1 순위로 꼽은 정책	통합 지원체계 구축 (2 개 과제)	53
	금융접근성 제고 (13 개 과제)	31
	판로확대 지원 (12 개 과제)	21
	인력양성 체계 강화 (19 개 과제)	15
무응답		10

-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있어 응답자 중 53명은 가장 우선순위 정책으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꼽았으며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의 순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임.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을 제기하고 있음.
- 또한 민간 당사자 조직의 협력, 협업의 근간이 되는 연대조직, 기금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제기하고 있음.

3)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체감도에 대한 의견

(본 항목은 온라인 설문조사는 제외하고 오프라인 조사결과만 수록)

항목	응답자 수	중요도	체감도
		응답자 평균	응답자 평균
통합지원체계	90	2.41	4.12
금융접근성제고	94	2.82	4.37
판로확대지원	96	2.61	4.27
인력양성체계강화	97	2.68	4.32

* 비고 : ① 매우 중요, 매우 체감 ~ ④ 보통 ~ ⑦ 매우 중요하지 않음, 매우 체감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음.
- 각 정책의 체감도에 있어서는 체감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나타나 앞서 정책의 실제 효과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 역시 정책의 파급범위의 제한과 민간의 정책 활용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과 현장역량 간의 시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4)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 결과

- 지역별 정책 집담회는 8월 28일 전남을 시작으로 9월12일 광주까지 총 10차례(8월28일 전남, 8월30일 대구, 9월3일 제주, 9월4일 부산, 9월7일 충남/경남, 9월11일 서울/충북, 9월12일 전북/광주)진행되었다. 권역 지원기관 및 연대회의 지역협의회가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의체 및 지원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활성화 정책 전달 및 실행과정에 대한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수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연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느끼고 있을까?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당사자의 과제는 무엇일까? 를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종합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단순히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던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곳도 있었다.
- 다만, 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경제정책 일반의 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여전히 협의구조가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진행되는 속도와 쏟아지는 양 때문에 70년대 경제개발 정책처럼 진행된다, ④ 통합기조를 지향한다고 하나, 분절적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⑤ 당사자들의 연대와 협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 정부 경제정책 기조 내에서(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사회적경제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접목할 것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사회적경제를 시장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로 쓸 것인지, 공

공성 확대를 위해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 정책 설계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미비한 상황에서, 많은 양의 정책 사업들이 빠르게 실행되고 있어 여전히 답다운 방식, 개발 사업처럼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통합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부처간, 부문간 분절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협의체나 네트워크 등을 육성하여 연대와 협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보았다.
- 부처별 사업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지원기관이나 당사자 협의체가 참여 주체를 조직하고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 사업이 종합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역량이 강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낼 민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역의 시선

- 현장의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 첫 번째로 중앙과의 격차를 들었다. 격차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설명되었다. 지역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어느 단위에서 추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정책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차이, 중앙에서의 결정이 수도권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더디게 실행되는 시간 차이가 그것이다.
- 이런 격차로 인해 정책 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정책이 추진되니 따르라’는 식의 불합리함이 온다고 보았다. 정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단위 협의체, 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정보가 공유되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지역 사회적경제 의제를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보완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두 번째, 현장에서의 적용이다. 희망고문처럼, 발표된 내용은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발표된 실행 정책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묶여 진행되지 못한다거나,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수익계약을 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지만 담당자는 감사가 무서워 어렵다는 소리만 한다거나,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 또한,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가 심하다거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이 타 지자체에서는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지자체에선 의지 부족으로 예산에서부터 책정되지 않아 아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있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단기간에 드러나는 성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매년 제자리에 머무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시간에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재차 설명해야만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 부처간, 부문간의 칸막이는 특히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역에서 더 체감하고 있었다. 마을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상당수 생소하다고 느꼈으며 실질적인 필요성 차원에서 동떨어져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활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며 복지영역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편입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 사회적경제 정책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때 충돌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개정하고 치밀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실행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세 번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성장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스템(예산 부족)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이 단계적으로 당사자가 필요한 것이어야 하나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중간지원조직의 성장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의 책정이 필요하며, (사업설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된 것이어야 하나) 중앙 정책의 행정적 전달 역할에 많은 부분 투여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며 그것에 맞춰 과업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역의 기득권 유지 문제와 당사자 조직이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 네 번째, 판로지원은 당사자 조직에게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이다.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다. 초기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맺기도 하지만 경험이 없는

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로, 집수리 자활기업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발표될 때 기대가 컸다고 한다. 지역의 상황은 현장조직들이 가장 잘 알지만 영세하다고 배제되고 타 지역 기업이 들어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마다 진행되는 판로지원 사업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 컨소시엄의 작은 성공 경험이 큰 성공 경험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활성화 정책 중에 가능성 있는 분야를 우선 집중 진입시켜 본다거나,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효과 있는 판로지원 사업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한다거나,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에 맞는, 인증기업은 인증기업에 맞는 단계별 공공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도와야한다고 보았다.
- 그 외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제적인 위협을 감수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시도를 위한 투자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대로 이어지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영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은 필수적이며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 시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3) 당사자가 당사자에 대해

- 대체로 상황을 돌아보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반복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왜 그럴까?
- 첫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스스로 관계를 강화시켜 가야하는데 사업으로만 만나고 구속되어 일상적인 연대와 협력이 어렵다고 하였다. 조직 간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작동해야 하는데 사업적 논의만 이뤄지다 보니 노하우를 공유한다거나, 문제를 드러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협업의 이익이 있지만 협업 과정에 드는 추가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협업을 촉진하고 보상하는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세 번째, 정책 의존도가 높아져 동등한 거버넌스 구조가 되지 않다보니 정부가 주도성을 가져가고 그것이 다시 정책 의존도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 네 번째,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다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네

트위크할 것인지 무엇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아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연대의 성공경험을 하나씩 발굴해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데 집중하면 연대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새로 진입한 조직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그 외 과제에 대해

① 사회적금융

- 금융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회적경제 성과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현재 자금의 장점(이자율 등), 신용보증기금이나 신탁의 중요성이 지방에선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자조기금을 만들어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는 의견도 있었다.

② 사회가치평가

-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지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그리고 사회적금융의 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는 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당사자 스스로 정의해 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내적원리에 기초한 가치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가치라는 것이 업종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니, 지표은행 방식으로 지표를 개발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적용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③ 교육

-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량은 분명 축적되어 가고 있다고 보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지역의 역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인재양성과 관련한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당사자 스스로 소셜미션을 정립하기 쉽지 않으니 본인들이 가진 가치를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협동조합교육원 같은 국가차원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민간 스스로 역량을 계발하고 인정받는 방법으로써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④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공단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사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회적경제가 지역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제한적인 바우처 이용자의 범위를 넓혀 이용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대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18년 통합박람회에서 제출된 사회적경제 보고서에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제안되었다. 만일 사업연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모델을 합의해내고 그 모델 자체가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까지도 제안되어야 한다. 사업연합을 말하면서 프로세스는 제안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진행한다면 견인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치밀하고 정밀하게 로드맵을 꾸리고 실행력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았다.

V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16일 ~ 12월 2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자수
대학, 교육, 연구기관 연구자, 교육자	7
사회적경제조직 대표자, 정책담당자	7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책임자	7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
총계	22

문1)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정적이다. (1점)	대체로 부적절, 부정적이다. (2점)	다소 부적절, 부정적이다. (3점)	보통수준으로 그저 그렇다. (4점)	다소 긍정적, 타당하다. (5점)	대체로 긍정적, 타당하다. (6점)	매우 긍정적, 타당하다 (7점)
응답비율	0.00%	0.00%	4.55%	22.73%	22.73%	50.00%	0.00%
빈도	0	0	1	5	5	11	0

-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묻은 설문에 대해 응답자 22명 중 16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는 5명, 부정적인 평가는 1명으로서 정책의 방향성,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항 1에 대한 세부의견

- 사회적경제 정책 통합,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회적금융, 인재양성, 진출분야 증 기존 정책보다 구체화하였음.
- 방향 설정에 있어 생태계 조성, 지역중심, 종합설계, 공공과의 협력, 민관거버넌스 조성 등 중요 방향은 잘 담고 있음
-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신설 등 국정과제로 추진 중

- 사회적경제 현장의 문제를 풀려는 노력, 적극적인 정책 수행 의지
- 현장의 만족 수준과는 별개로, 현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1년 동안에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방안이 나온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함. 다만, 정책평가에는 정책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설문은 개별 의견을 집계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전하고 싶음.
- 기대보다 현실적인 조건과 현 정부의 능력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대할 사람이 그다지 없음)
- 부처에 관계없이 사회적경제가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민의 주도성을 고려하고 있음
-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현장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지 못해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다소 아쉬움
-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틀을 짜기보다 뿌리도 내리지 않았는데 열매부터 거두려하고 있고. 현장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연계되어 만들어지고 있음
- 큰 틀에서 방향은 공감하지만 각 론은 큰 틀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
- 사회적 금융, 판로, 교육, 지원체계 등 중요한 꼭지를 두루 잘 이슈화 함.
- 사회적경제 정책을 한시적이고 즉각적인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음. 특히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분야의 인력과 노하우가 수도권으로 흡수되어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초기보다 후퇴되거나 과거 초기의 어려움보다 더 복합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생각임
- 정책이 항상 새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활성화방안은 이전 10년 정도 현장에서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서 이미 정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편집한 경향이 있음 . 즉, 사회적경제의 장기비전이나 미션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방안이 아닌 현안을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됨
- 지역 풀뿌리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부조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 광역단위의 지원 조직이 정보를 독점하고 풀뿌리 지원조직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도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직접사업을 추진하는데 풀뿌리 지원조직과는 전혀 사전 논의나 협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현 정부가 특별히 사회적 경제에 방점을 찍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어 보

입.

- 특정 부처 중심으로만 사회적 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부, 과기부 등은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임.

문2)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 정책(통합지원체계 구축 / 금융접근성 제고 / 판로지원 확대 / 인력양성체계 강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정적이다. (1점)	대체로 부적절, 부정적이다. (2점)	다소 부적절, 부정적이다. (3점)	보통수준으로 그저 그렇다. (4점)	다소 긍정적, 타당하다. (5점)	대체로 긍정적, 타당하다 (6점)	매우 긍정적, 타당하다. (7점)
[공통정책] 통합지원 체계 구축	0.00% 0	0.00% 0	13.64% 3	36.36% 8	27.27% 6	22.73% 5	0.00% 0
[공통정책] 금융접근성 제고	0.00% 0	9.09% 2	0.00% 0	22.73% 5	31.82% 7	36.36% 8	0.00% 0
[공통정책] 판로지원 확대	0.00% 0	4.55% 1	9.09% 2	18.18% 4	31.82% 7	36.36% 8	0.00% 0
[공통정책] 인력양성 체계 강화	0.00% 0	9.09% 2	0.00% 0	18.18% 4	45.45% 10	27.27% 6	0.00% 0
[분야별 정책] 사회서비스 분야	4.55% 1	0.00% 0	9.09% 2	27.27% 6	54.55% 12	4.55% 1	0.00% 0
[분야별 정책] 주거환경 분야	0.00% 0	4.55% 1	13.64% 3	27.27% 6	45.45% 10	9.09% 2	0.00% 0
[분야별 정책] 문화예술 분야	0.00% 0	4.55% 1	13.64% 3	22.73% 5	54.55% 12	4.55% 1	0.00% 0
[분야별 정책] 프랜차이즈 분야	0.00% 0	4.55% 1	13.64% 3	31.82% 7	40.91% 9	9.09% 2	0.00% 0
[분야별 정책] 소셜벤처 분야	0.00% 0	0.00% 0	4.55% 1	27.27% 6	36.36% 8	27.27% 6	4.55% 1
[분야별 정책] 지역기반연계 분야	0.00% 0	4.55% 1	13.64% 3	27.27% 6	31.82% 7	18.18% 4	4.55% 1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각 영역에 대해서도 대체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응답함.
- 다만, 정책의 구체성, 민관협력의 깊이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세부 의견이 다수 제

기되었으나 현 정부가 매우 급박하게 출범하였고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감안할 때 단 시간에 민-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방안을 연속해서 도출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문항 2에 대한 세부의견

- 최근 판로유통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그러나 여전히 지역특화 분야의 활성화는 지역 간 특성에 따라 민관협치의 어려움, 재원과 정책부재 등으로 열악하며 이는 부진한 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추진과 맞닿아 있다고 사료됨. 소셜벤처 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정책은 업종의 다양성, 그 다양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전략부재 등에 대한 컨설팅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함
- 각 정책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이지만 실행계획이 가시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
-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통합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음 소셜벤처 분야는 본 사업의 근본적 문제인 사업의 유연성 부족(행정 및 예산상의 제약이 많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 대안임
- 대체적으로 취지와 방향을 공감하나, 이의 실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상당부분 노출되고 있음
- 2017년 정부의 발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당사자,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전달체계 등의 협업, 사전 의견조사 등의 과정이 없음
- 정책적 설계와 방향은 좋은 편이나 실행력과 구체성은 부족
-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다만, 분야별로는 기존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다.
- 설문에 체크했으나 판단이 어려운 감이 있음. 이유는 1) 정책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빠르고 2) 각 분야별 실행진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 판단이 쉽지 않음, 3) 분야별 정책은 해당 분야별 산업 활성화 정책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바 실행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수준과 역량 축적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함. 상대적으로 소셜 벤처 분야는 기존 벤처 정책, 중소기업 정책과 맞물려 정책 설계-수립-실행-시너지로 연결되는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임. 반면,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사회 서비스 부문은 정책 이해 및 침투가 쉽지 않음

- 주된 내용은 상당부분 필요와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는 현안중심이었으며 그나마 1년이 지났지만 가시화된 분야는 잘 보이지 않음.
- 전 분야를 망라하고 사회적경제와의 협업과 접근을 열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뉴딜, 산업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좋다고 생각한다.
- 청년창업에만 전반적인 정책이 포커싱되어 있을 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음.
- 기초지자체 단계에서 민과 협치나 민간주도성이 잘 안 된다
- 전반적으로 현장과의 연계성, 현실성이 낮음.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담론에 머무르고 있음. 개별적인 접근에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변화나 실제 적용되고 있는 직/간접 사례 등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 인재육성, 금융,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함
- 돈으로 모든 것을 본다. 문화 가치 참여도 공감대가 부족하다
- 분야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장 상황이 반영됨
- 새 술은 새 부대에 과거 지원방식과 차이 점 발견하기 어려움. 우리사회의 사회 경제인과 관료들의 인식은 과거 개별 기업체 지원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음. 연합체와 생산자 소비자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 방향성에 동의

문3)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어떤 분야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응답 (비율 / 빈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의 확보	54.55%	12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정비	13.64%	3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양성	9.09%	2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	0.00%	0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0.00%	0
다양한 경제활동 영역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진입지원	13.64%	3
기타	9.09%	2

- 응답자의 과반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함.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미제정 상태이고 주무부처의 역할, 부처간 협력구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뤄낸 성과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공고한 정책기반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 문항 3에 대한 세부의견 : 현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해야 할 사회적경제 분야 핵심적인 정책방향과 목표

- 일단 기본법 제정이 추진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단계에 맞는 지원의 수준과 방식의 체계적이고 합리적 전략수립과 실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각종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반 근거 마련이 우선 필요함
- 방향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법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 / 목표 :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체감도 높이기,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대 국민 공감, 사회적금융 자리 잡기,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확대
-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어 규모화 가능한 기금의 조성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풀뿌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 정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경우, 관료주의적 사고와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음.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부는 힘을 기울이고, 긴 안목으로 민간의 자생적인 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봄. 지난친 정부주도의 느낌이 있으며, 대기업, 사업전반에서의 호응도는 너무 적다라고 판단됨
- 생태계조성과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존재이유와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 범부처 컨트롤 타워
- “사회적경제 부문의 가시화와 타 경제부문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립“이라고 생각함.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및 차별적 제도 시정, 사회적경제 실체에 대한 정부 통계 확립,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대한 이해 시정 및 제고. 인재양성 (연구/교수 인재, 경영인재, 활동가인재. 각각의 품질 수준이 일정하게 확립되어야 할 필요), 사회적경제 통계(사회적경제 실체의 규모를 가시화해야)...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립-실행-평가되어 개선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과 통합 내 다양한 경로의 제도화. 크고 담대한 사례의 추진
- 커뮤니티케어(복지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산자부) 등과 같이 각 부처의 핵심 역할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다시 정의하고 통합적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함
-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경제이니,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잘되면 정부가 바꾸고 법이 미비해도 사회적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일반 시장경제체제에 진입 및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기본법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 상호 모순적인 제도의 개선, 사회적 경제성과 측정을 위한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및 측정에 대한 연구 및 지원,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의 확대 등등
- 사회적경제의 법적 기반 확보와 부문별, 업종별, 지역별 현장 네트워크 강화, 네트워크 그룹과 정책 및 실행 파트너십 강화 등
-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사업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
- 하나라도 뿌리가 내리도록 하여 현재의 활동가가 없어져도 또 다른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현장이 되도록 의식화 교육을 해야 한다
- 우호적인 생태계의 조성에 기반이 되는 기본법, 체계의 마련
- 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하지만 국회의 사정으로 볼 때 법 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함.
- 미래 지향적 법적 근거 확보

문4) 귀하께서는 현재 사회적경제 현장의 전반적인 조직 및 사업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1점)	대체로 낮다 (2점)	다소 낮다 (3점)	보통이다 (4점)	다소 높다 (5점)	대체로 높다 (6점)	매우 높다 (7점)
응답비율	4.55%	27.27%	36.36%	27.27%	4.55%	0.00%	0.00%
빈도	1	6	8	6	1	0	0

- 응답자 다수 (22명 중 15명)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및 사업역량에 대해 낮다고 평가하였음.
- 일부 소수의 기업과 조직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사업능력, 실행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내발적 동력의 취약함을 제기함.

- 취약한 자생력과 기업 간 편차 등에 의해 정부 의존성을 탈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제기되었으며 인재, 특히 경영역량의 부재, 부족이 많이 제기됨.

○ 문항 4에 대한 세부의견

- 일부 10% 미만의 기업과 조직을 제외하고는 인식은 물론, 실행능력과 역량이 표준 미달이라고 봄. 이는 1세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가에서 2세대, 3세대로 진화되는 과정의 교육과 경험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생각임
- 사회적경제 현장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나 현장 내발적 동력이 확고하지는 않음.
-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및 사업역량의 편차가 커서 보통으로 체크함. 즉 전문성 등 역량이 매우 높은 곳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곳 등 편차가 크다는 것임.
- 제도 환경 및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일반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의 자생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현 정부에서도 기존 금융/정부당국 인프라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의존성을 탈피하기 어려울 듯함.
- 양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사회발전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약하고 지나치게 당사자조직들의 이해관계 중심의 운영방식의 한계
- 현장의 역량은 격차가 크다. 역량이 낮은 쪽은 경험 외에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발성과 필요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다. 그것을 고양시킬 정책과 지원도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 사회적경제는 간단히 말하면 “사회문제를 사업 활동이란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기업”임.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협동조합도 사람, 자본, 기술을 결합하여 사회(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품질을 제공해야 함. 정권은 바뀌어도 기업은 계속되는 존재임(on going). 이런 점에서 특히 경영인재가 부족하고 기업으로서의 생존역량 자체가 취약한 상태. 협의회 등 연대, 연합을 이야기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1차적으로 중요한 연합, 연대는 사업연대임. 사업의 공통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거나 공통품질기준을 마련하거나 자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리스크 분담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음. 사업연대의 성공모델로 제시할만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임
- 뛰어난 조직과 인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창업과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조직이 더 많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형식적 육성 또는 제한적 육성을 해 왔음. 특히 협의회나

중간지원과 같은 허브/연계 협업을 견인할 주체를 형성하는데 매우 미온적이었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인적 주체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아직 현장에서 일하는 리더와 전문가 수준이 높지 않고 숫자도 적다.
-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 등 기본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역량은 낮은 수밖에 없음.
- 일선 활동가 역량이 우선 양적으로 절대 빈약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도 낮고,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역량 수준도 낮은 상태라고 여겨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도 부족함.
- 부문별 네트워크간의 협력체계 미흡. 특히 사업 분야별 네트워크는 부문별 조직 틀 등으로 협력 활동이 극히 미흡. 네트워크 조직의 가치와 비전, 목적, 활동이 전체 사회적경제 강화로 연계되는 지점의 모호함 등
- 정책이 많이 양산되고 있으나 현장과 괴리가 있다. 정책의 섬세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장의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 현장 조직의 업력이 짧고, 보조금 중심에 익숙함. 연대와 협력의 경험, 기반의 부족
-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연대로 풀 수 있는 것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음. 또 재화 및 용역 분야가 다양하지 못함.
- 열심히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경영 역량이나 제품의 경쟁력 등에서 다소 미흡

문5)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책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 현장이 가장 주력,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 조직 내, 외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대협력이 가시화되어야함.
- 사회적경제 현장은 가장 우선으로는, 현재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이 키우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현장 간의 다양한 연대와 협력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현장 개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역량의 차이도 있으므로 연대와 협력의 방안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당사자 조직의 개별적 발전과 더불어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적 위상 확보 및 존재성의 사회적 공감 확보
- 8번에서 제시했듯이 해당 분야에서의 사업연대, 또는 소비자 만족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
-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역순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주요사례 발굴과 이를 위한 민관의 역량집중! 좋은 사례가 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사례가 자리 잡고 전국으

로 확산하도록 협력해야함

- 사회적경제에서 일할 인력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개방된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많은 방법론에 대한 공부 필요함. 실제 현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필요하며, 말이 아니라 데이터와 숫자로 자신의 성과와 주장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현장의 구성원을 만들고 그들을 교육하고 참여시켜 자신의 일로 인식토록 해야 한다. 현장에 구성원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소극적이다
- 지역 단위에서의 부문조직의 연대체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강제, 견인이 시급함
- 정부는 5년마다 바뀔. 따라서 사회의 많은 세력과 연대하고 자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함.

문6) 사회적경제 현장의 당사자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해 꼭 당부 또는 제언할 사항

-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관거버넌스)
-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 사회적경제 현장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민관의 굿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설문에도 그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
- 중앙정부는 지역 풀뿌리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 지자체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서울/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전국단위로 확산 이전할 수 있는 소도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단위 체계의 구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지방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 관련 예산의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알듯 함.
-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당사자들을 이끈 다기 보다는 그들을 지원한다는 방향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 중간지원조직의 개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리스크 분담 체제 확립: 민간위탁은 최소 3개년을 기본으로, 민관 함께 사업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율성 부여 (공무원의 이중체크구조 해소), 경영성과의 수취 인정(성과가 목표를 넘을 시, 해당

중간지원조직의 적립금으로 인정, 향후 독립 시 기본재산으로 활용가능), 리스크 분담(성과 미달, 지원조직의 실패에 일정한 책임과 보상 연계) 3) 사회적경제기업의 회계, 재무관리, 감사에 특화된 중간지원조직 검토

-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본조달, 연관 법 정비, 대표사례의 추진 등이 요구됨
- 단체장 등 리더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를 더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 더 이상 양적 팽창이나 확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정부 지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정확히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를 숙지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한 후 설립이 되었으면 함.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서 주민들 또한,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함.
-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 활동가들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역사회 총괄 혁신담당관으로 적극 역할 하는 방안이 전국화 되는 것부터 추진
- 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현장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민간 조직과 협업을 통해 생태계 차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접근 필요
-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인 양성, 실험 실습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원칙, 연대 협력, 일거리(입찰제도,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 노력 등임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현재 추진 중인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이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거나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역시 안정성이 취약함
- 사회적경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촉구됨

2) 민간의 혁신과제

① 개별 기업 단위

- 기업의 고유미션 실현 및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개발, 수행역량의 강화

② 업종/지역/연합체 단위

- 해당분야 업종의 혁신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인 사업 개발, 추진역량의 강화

③ 정책역량 강화

- 기업/업종/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실사구시적 정책개발 및 정부, 국회,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④ 공적 지원정책의 확대에 따른 민간의 책임성 강화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 경주

3) 정부/지자체의 혁신과제

① 정책의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사업, 금융, 판로 등) 홍보 및 맞춤형 정책 활동 지원

②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

- 정부/지자체 종합정책(5개년 계획) 및 분야별 사업 정책 수립시 정책의 공동생산 구조와 프로세스 구축
 -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정화, 내실화
- ③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정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신속한 장벽 해소
- ④ 지자체 단체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인식 증진 및 민간의 참여 확대(정책 거버넌스, 개방직 공무원으로 참여 확대)



작성자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대훈

위 원 강민수 김동원 김현철 김호영 오춘희 이상진 이현배
정창윤 조현경 주수원 최영미

지역위원회

위원장 하재찬

위 원 김기태 김윤미 김태인 박진영 유세종 유정배 윤봉란
이현민 주영덕

사무국장 박용원

집행위원장 안인숙

상임대표 임종한

작성일 2018년 12월 31일
